

‘26년도 해양수산 소규모사업장 안전보건 컨설팅 지원사업 모집 공고

해양수산부에서는 해양수산 소규모사업장 중대재해 예방 및 체계적인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「‘26년도 해양수산 소규모사업장 안전보건 컨설팅 지원사업」 대상 사업장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6년 02월 12일

해양수산부장관

1 사업개요

□ 사업 목적

- 해양수산 소규모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 지원(전액 국비)으로 해양수산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 도모

□ 사업 내용

- (신청 자격) 해양수산 소규모사업장(상시근로자 5인 이상 ~ 50인 미만)

< 해양수산 소규모사업장 세부 업종 >

구 분	세부 업종
해 운 업	■ 해상여객·화물운송업, 해운중개업, 해운대리점업, 선박대여업, 선박관리업 등
항만운송업	■ 항만하역업, 검수·감정·검량업, 항만운송관련사업 등
어 업	■ 내수면어업, 원양어업, 낚시어선업 등
수 산	■ 낚시터업, 양식업(내수면·해수면) 등
해양레저	■ 마리나업, 수중레저업 등

* 연근해 어선은 "어선원 안전·보건 관리체계 구축" 사업으로 별도 추진하고 있어 제외

- (컨설팅 비용 / 규모) 국비 전액 지원 / 60개 사업장
- (컨설팅 방법)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(3회)하여 ①컨설팅 안내·진단, ②위험요인 파악 및 관리체계 점검, ③개선(안) 제시 등 3단계 추진

< 안전보건 컨설팅 추진 일정(안) >

단계	주요사항	컨설팅 세부 내용	수행방식
1회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컨설팅 안내 및 사전 준비 ○ 안전보건 관리체계 수준 진단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컨설팅 안내 및 사업장 기본정보 파악 - 위험성평가 운영수준 진단 - 위험성평가 사전 준비사항 확인 * 위험설비 보유현황, 산업재해 현황 파악 등 - 안전보건 방침·목표 및 산재 예방·대응 절차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 확인 - 경영자, 근로자 면담 등 	2인1조 (사업장 방문)
2회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위험성평가 지원 ○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지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위험공정, 위험 설비, 위험 작업, 유해인자 등 유해·위험요인 파악 - 위험성 결정, 위험요인별 제거·대체 및 통제 개선대책 마련 -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요소 점검 * 안전보건 방침·목표, 비상조치, 안전보건 평가 및 관리 등 관리체계의 적정성 확인 등 - 경영자, 근로자 면담 등 	"
3회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개선안 제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컨설팅 사항에 대한 종합평가 제시 - 위험성평가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 	"

* 컨설팅 이후 일부 사업장에 대하여 컨설팅 만족도, 제시된 개선안의 적정성, 이행 여부 등에 대해 현장 방문 또는 설문조사 예정

2 **접수기간 및 방법**

□ 신청 방법

- (모집 기간) 2026. 2. 20.(금) ~ 2026. 3. 20.(금)
- (제출 방법) 해양수산부 누리집(www.mof.go.kr) 접속 > 알림·뉴스 > 공지사항 > 신청서식 다운로드 > 이메일 제출
- (제출 서류) ① 신청서, ② 사업장 등록증
- (제출 처) su2958@korea.kr
- (대상 발표) 개별 통지

(문의처)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관리과(051-773-6074, 6073)

안전보건 관리체계 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서

연번	구분		비고
1	사업장 정보	사업장명	
		전화번호	
		소재지(주소)	
		업종(세부)	
2	대표자	성명/연락처/이메일	
3	업무담당자	성명/연락처/이메일	
4	상시근로자 수	내·외국인을 포함한 정규직, 임시·기간직, 일용직 포함	
	선박/위험설비/화학물질 취급 여부(종류, 용도 기재) * (위험설비)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제1호에 따른 기계설비 또는 이에 준하는 기계설비 등 * (화학물질)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[별표26]에 따른 유해인자 또는 이에 준하는 화학물질	(예시) - 선박 1척(500톤/화물운반) - 크레인 2대(선박용) - 포름알데히드 (수산용 포르말린으로 사용)	
	최근 5년간 사업장 내 산업재해 발생 여부	발생년도/건수/재해개요	
5	정부-민간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?		예 / 아니오
6	사업장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법령 의무사항 이행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구축되어 있습니까?		① 구축 완료 ② 일부 구축함 ③ 전혀 없음
	사업장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까?		예 / 아니오
7	대상으로 선정될 경우, 컨설팅 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참여하는 등 컨설팅에 적극 협조할 것을 확인하였습니까?		예 / 아니오
8	대상으로 선정되어 컨설팅을 받을 경우, 귀 사의 컨설팅 결과(매뉴얼, 위험성평가)가 공익을 위해 타 사업장에 공유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?		예 / 아니오

신청인(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)

년 월 일
(서명 또는 인)